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24
----------	-------

발의연월일 : 2025. 8. 18.

발 의 자 : 강승규 · 조지연 · 김위상
김용태 · 신동욱 · 조배숙
인요한 · 박준태 · 박형수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인 사항이 기록되거나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등록부의 정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된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사례에서와 같은 경우 비록 정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의 재작성은 되지 않아 당사자로서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례에서와 같이 잘못된 기록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그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예외적인 재작성 가능성을 간략히 언급하고는 있으나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그 요건에도 문제가 있어 위 사례 등에 대한 대응에는 부족함).

이에 직계인척관계인 당사자간에 혼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잘못된 기록의 피해자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중 “정정”을 “정정 및 재작성”으로 한다.

제5장에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등록부의 재작성) ① 제104조제1항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정정의 대상인 기록(제18조, 제104조 또는 제105조에 따라 이미 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민법」 제815조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사건 본인은 그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인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재작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재작성되는 등록부에는 제104조제1항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정정의 대상인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누락된 사항은 처음부터 누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기록한다.

- ④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부의 재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기존의 등록부에 폐쇄의 표시를 한 후 폐쇄등록부로서 관리한다. 이 경우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등록부에 대하여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 ⑤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9조, 제41조, 제42조는 등록부의 재작성신청에 준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의 재작성 및 기존 등록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정정의 대상인 기록(이미 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장 등록부의 <u>정정</u> <u><신 설></u>	제5장 등록부의 <u>정정 및 재작성</u> <u>제108조의2(등록부의 재작성) ①</u> <u>제104조제1항 또는 제105조제1</u> <u>항에 따른 정정의 대상인 기록</u> <u>(제18조, 제104조 또는 제105조</u> <u>에 따라 이미 정정된 경우를</u> <u>포함한다)이 「민법」 제815조</u> <u>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u> <u>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u> <u>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사</u> <u>건 본인은 그 등록기준지를 관</u> <u>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u> <u>아 등록부의 재작성을 신청할</u> <u>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u> <u>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u> <u>을 준용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허가의 재판</u> <u>이 있었을 때에는 제1항의 신</u> <u>청인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u> <u>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u> <u>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재작성</u> <u>을 신청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u>

여 재작성되는 등록부에는 제104조제1항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정정의 대상인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누락된 사항은 처음부터 누락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기록한다.

④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부의 재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기존의 등록부에 폐쇄의 표시를 한 후 폐쇄등록부로서 관리한다. 이 경우 폐쇄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등록부에 대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⑤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9조, 제41조, 제42조는 등록부의 재작성신청에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의 재작성 및 기존 등록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